

(주)에프앤에프홀딩스 금융투자상품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 2021. 0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에프앤에프홀딩스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투자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이사회 의장이 한다.
- ③ 위원은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대표이사,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사내이사,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심의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금융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투자팀에서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 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의사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제안·주관한다.
- ② 위원회는 통상 서면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하며, 서면의 방법에 의한 위원회는 전자결재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③ 서면의 방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대면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대면의 방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 의결한다.
 1. 다음 각 목을 고려한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여부
 - 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주요 조건 및 현황
 - 나.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장 현황 및 사업 현황
 - 다. 금융투자상품의 재무 현황 및 투자 회수 계획
 2.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금융투자상품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3. 그 외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심의, 의결의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제4조②항의 서면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전자결재 내역
2. 제4조⑤항의 대면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제6조(심의 제외 금융투자상품)① 제5조①항의 각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대표 결재를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1. 만기 시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투자상품
2. 우리나라 신용등급 기준 BBB+ 이상의 우리나라 및 해외 기업 및 기관이 원금의 상환을 약정한 채권 및 채권형 투자상품
3. 각국의 종합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4.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한 상품에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② 제5조의①항 및 제6조의①항의 각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유동성이 충분한 MMF, 수종의 단기신탁, 환매조건부증권, 수종의 전자단기사채, 수종의 어음, 수종의 단기채권형 금융상품 등 만기가 3개월 이하인 현금성 금융투자상품

제7조(심의 후 위임 전결)①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안이 결정된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최초 투자 원금이 100억원 이하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진행한다.
2. 최초 투자 원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진행하나 직후 열리는 '이

사회'에서 그 투자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 7조의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 원금은 총 약정금액으로 한다.
- ③ 제 7조의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 원금에는 환헤지를 위한 자금보충 등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제 7조의 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투자의 사결정에 '이사회'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는 '이사회'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가 사전에 투자의사결정의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모든 투자의 의사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위임 받은 이'의 결재를 통해 진행한다.

제8조(금융시장 급변 시 보고)① 다음 각호의 금융시장 변화에 의하여 투자자산의 회계적 평가금액의 비정상적인 변동이 예상될 경우, 운용부서는 투자자산 현황 및 대응방안을 '투자심의위원회',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지수가 최근 1개월간 30% 이상 하락한 경우
 - 2.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1개월간 1%p 이상 상승한 경우
 - 3.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통화가치가 최근 1개월간 20% 이상 하락한 경우
 - 4. 금융투자상품의 평가금액이 투자원금대비 30% 하락하거나 최근 3개월간 30% 이상 하락한 경우
- ② 보고의 형태는 문서 형태로 서면 혹은 대면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부득이 구두의 형태로 진행한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9조(주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여부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주)에프앤에프홀딩스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여부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투자 설명) 간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대면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 이 지침은 2021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

xx 여유 자금 운용을 위해 하기 투자 건을 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
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함

심의 일자: 202x년 x월 x일

심의 안건:

투자 개요:

- 금액:
- 운용사:
- 기간:
- 기대수익률:
- 투자대상:
- 관리보수:
- 성과보수:
- Exit 전략:
- Risk:

위원 1		위원 2		위원 3	
가	부	가	부	가	부